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제·개정의 원칙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시·도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3. “학교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이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국가교육과정은 시·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정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3. 국가교육과정은 시·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4.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5.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참여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6.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한다. 다만, 국민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제·개정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법 제12조제1항의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교육과정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5조(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2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조사·분석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조사·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발의)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개정 발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경우
 2.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는 경우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제안에 대해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대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발의한다.
- ⑥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안자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수립)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발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이하 “제·개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위원회는 제·개정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는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4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연구를 진행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제·개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교육과정 개발)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제·개정 계획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을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연구센터를 통해 국가교육과정개발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개발과정에서 모니터링단이나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 ④ 위원회는 개발한 시안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는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교과별,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고시)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개발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시한다.

제10조(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을 위해 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는 상근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 및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발의, 계획수립, 개발, 심의·의결·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조사·분석 및 점검을 지원하고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단은 유·초·중등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1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재외국인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게”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게”로 한다.

⑥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의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⑦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로 한다.